## 학교규칙개정안 신구 대비표

배곧라온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 대조표

현 행(개정 전)	2019 학교규칙(개정 후)	비고
신설	제2조(적용범위) 학교의 적정한 관리 운영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과 동시행령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기타 법령 사항 이외는 이 규칙에 의한다.	초 · <del>중등교육</del> 법새행령
	제16조(출결처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투, 담임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단 결석 기간이 3일 이상일 경우에는 증빙자료(소견서, 진단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연간 출석 인정 일수(20일 이내)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 5. 가족 및 친인적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신설 (②,③항)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하게,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함께.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함께.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압양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난할 수 있음.           6. 학생의 징계 등으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7.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 강의           8.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기피하게 장기 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학교 수업 참여 또는 화상 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 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 2
신설	제17조(학업성취도평가) ①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업성취도 평가는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으로 교사별 평가를한다. ②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13조
신설	제22전(조기입학 및 연기) ①학부모가 조기입학신청서를 동(洞의 장에게 제출하여 취학아동명부에 등 재된 아동은 학교장의 별도의 허용절차 없이 신입생으로 한다. ②학부모가 입학연기신청서를 동(洞의 장에게 제출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아동은 학교장의 별도의 허용절차 없이 입학이 연기된 것으로 한다.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신설 (②항)	제23조(재취학) ②재취학은 장기 입원이나 장기 결석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자진 포기했던 학생을 심 사위원회(학부모, 해당학년 교사, 교무부장, 교감)에서 심의하여 이를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초 · <del>중등교육법</del> 시행령 제25조
신설 (②항	제24조(전입학) ② 전입생에 대하여는 주소지의 변경(통학구역 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입학을 허가하고, 전출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 송부를 요청한다.	초 · <del>중등교육</del> 법시행령 제25조
신설	제25조(전학) (기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교육청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신설 (②항)	제26조(재외국민자녀의 입학) ②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할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신설	제27조(편입학) 편입학은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어린이 중 지적능력면(국어,수학), 인성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대인관계면 등을 심사위원회(학부모, 해당학년교사, 교무부장, 교감)에서 심사 후 해당학년에 허가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편입학 하도록 권장한다.	
신설 (③,④형)	제28조(유예 및 면제) ③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규정에 의해 취학의 무의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육부진으로 인한 어린이  3.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④ 위의 ③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를 신청한 어린이의 학부모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신설 (①,②항)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을 한 학생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
신설 (①,②항)	제32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 위원회를 둔다.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배곤라온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2 - 유예·면제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운영(제25조의2)
신설	제33조(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학교장은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입학, 재취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그 보호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 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며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처리한다.	초 · 중등교육법새행령 제25조
신설 (②,③,④,⑤항)	제35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②본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 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 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제 조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초·중등교육법새행령 제27조
신설	제47조(학부모회의 설치)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 바지하기 위하여 배꼳라온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항은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제48조(개별화교육 조직)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9조(개별화교육지원 팀의 구성 등의 법력에 의거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개인별 요구에 적절한 교육의 제공 및 특수교육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제50조(개별화교육 목적) 각 학생의 교육적 욕구에 부합되는 교육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계획과 실행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별화교육 계획을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개별화교육위원회 구성)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 해당 학생의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사,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인력(필요시)으로 한다. 제52조(개별화교육 심의)개별화 교육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시항을 심의한다. 1. 특수교육대성학생의 통합학급 배치에 관한 문제 협의 2. 특수학급 운영상의 제반 문제 협의 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제반 시항 가. 학생의 능력 및 특성에 맞는 교육목표를 정한다. 나. 목표에 적절히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강구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 시항과 특별한 교육자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한다. 라.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마. 학기말에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수정한다. 4. 입, 환급 및 추수지도에 대한 논의 5. 통합교육관련 제반 문제 논의 6. 시설확충, 교재교구확보, 특수교육 활성화에 대한 논의 등 7. 기타 특수학급에 관련되 제반 심의 시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제53조(개별화교육 운영) 개별화교육운영은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한다. 제54조(서류송부)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입학교에 14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신설	제54조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배공라온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교원예유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학교장 추천 전학' 요청 여부, 심리치료 등의 심의 포함)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시항 제55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교원 3인, 학부모 6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하되 교감은 당연적으로 하며 학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시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되나 학생 졸업의 경우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신설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	초· <del>중등교육법</del> 시행령 제25조
제4조(교육목표) 배곤라온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는 큰 꿈, 새로운 도전, 함께하는 행복한 배곤라온 교육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4조(교육목표) 배곧라온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큰 꿈, 새로운 도전, 함께하는 행복 학교를 비전으로 삼으며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배움을 즐기는 어린이(라온 배움인) 2. 서로 배려하고 어울리는 어린이(한울타리인) 3. 놀이와 쉼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도담도담인) 4. 꿈을 용기 있게 펼치는 어린이(꿈비라기인)	2019 배곧라온초등학교 교육과정
	제7조(수업연한) ~ (단, 동법 제29조에 따른 조기 진급제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시행 지침에 따른다.)	초 · <del>중등교육</del> 법시행령 제9조
제35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본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본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새행령 제27조
제36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부여 평가를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시항은 본교 학교장이 따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시행한다.	제36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 원(이히"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초 · 중등교육법새행령 제27조
제14조(수업운영) ⑤ ~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제14조(수업운영) ⑤ ~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mark>20일 이내</mark> 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mark>20일 범위 내</mark> 에서 출석으로 인정	2019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운영 지침
제16조(출결처리) ④ 연간 10일 이내	④ 연간 <mark>20일이내</mark>	2019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운영 지침
제37조 (학교장체험학습 규정)②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 습 수업 인정 일수는~10일로	제37조 (학교장체험학습 규정)(②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mark>20일</mark> 로	2019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운영 지침
제43조(훈육훈계방법)	제43조(생활교육방법)	인성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2015.7),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자원 조례 시행(2015.10.13.) 및 2016 경기교육기본계획(2016.2)
제44조(학생선도)	제44 <i>전</i> (학생 <mark>생활교육)</mark>	인성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2015.7),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 시행(2015.10.13) 및 2016 경기교육기본계획(2016.2)